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김정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03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01일

발 의 자 : 김정환, 강대호, 강동길,
김경영, 김기대, 김기덕,
김인제, 김평남, 김희걸,
노승재, 송아량, 유정희,
이광성, 장상기, 홍성룡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‘과태료 부과기준’에 따라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하도록 하며, 저공해 조치 비율이 낮은 수도권 외 차량의 적극적인 운행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행제한 위반 단속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(조기폐차 포함)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안 제10조제3항)
- 나.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(안 부칙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제5조의2”를 각각 “제5조의2제1항”으로, 같은 항 중 “제5조제1항에”를 “제5조의2제1항에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)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의2제1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(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를 말한다)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)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<u>제5조의2</u>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<u>제5조의2</u>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<u>제5조제1항</u>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	<p>제10조(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) ① ----- <u>제5조의2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제5조의2제1항</u>에 ----- ----- <u>제5조의2제1항</u>에 -----.</p>

문서번호

2021120700000002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김정환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원상 팀장
박주용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12.07

회신일 : 2021.12.07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(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) 신설에 따라 세입감소 발생
 - ※ 제10조제1항은 ‘제5조의2’에서 ‘제5조의2제1항’으로 과태료 적용대상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비용 증가 또는 세입 감소 미발생
 - ※ 제10조제2항은 상위법령인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[별표] <과태료 부과기준>에 부합하도록 ‘계절관리제’와 ‘비상저감 조치’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‘계절관리제’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금액은 둘 다 건당 100천원으로 동일하므로 비용 증가 또는 세입 감소 미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1) 추계결과 = 533,018천원

- 예상되는 한시적 세입감소가 533,018천원임
 - 추계의 전제
 - 비용은 2022년 한시적 발생(2021.12월 발생분도 과태료 부과 통보 및 저공해 조치, 행정처리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세입감소는 2022년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)
 - 2021.12월~2022.3월 수도권 외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 대수는 2020.12월~2021.3월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차량 중 2021.11월말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3,760대로 전제
- ※ 제2차(2020.12월~2021.3월)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차량 저공해 조치 현황
(2021.11월말 기준, 단위 : 대)

구분	위반차량	저공해조치 완료			저공해 미조치	
		계(B)	장치부착	조기폐차		
계	28,911	19,333	66.9%	7,031	12,302	9,578
서울	6,229	4,158	66.8%	960	3,198	2,071
인천	1,345	835	62.1%	188	647	510
경기	13,336	10,099	75.7%	4,188	5,911	3,237
수도권 외	8,001	4,241	53.0%	1,695	2,546	3,760

자료 :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

- 2021.12월~2022.3월 수도권 외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1대당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.12월~2021.3월 전체 운행제한 위반 차량 중 2021.11월 현재까지 저공해 미조치한 9,578대에 부과된 과태료 총 건수 30,671건으로 나눠 해당 3.2건으로 전체(수도권 외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는 별도 없음)

※ 제2차(2020.12월~2021.3월)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
(2021.11월말 기준, 단위 : 건)

구분	부과대상	부과취소(저공해 조치)			실제부과(저공해 미조치)		
		계	취소종결	환급대상	계	납부	미납
건수	112,222	81,551	75,695	5,856	30,671	4,908	25,763
비율	100%	73%	67%	5%	27%	4%	23%

자료 :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

- 2021.12월~2022.3월 수도권 외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2022.9월까지 저공해 조치 비율은 2020.12월~2021.3월 수도권 외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2021.9월까지 저공해 조치완료 비율인 44.3% 적용

※ 제2차(2020.12월~2021.3월)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차량 월별 저공해 조치 현황
(단위 : 대)

구분	위반차량	저공해 조치 완료(누적)							
		'21.4월	'21.5월	'21.6월	'21.7월	'21.8월	'21.9월	'21.10월	'21.11월
계	28,911	9,447 (32.7%)	11,476 (39.7%)	13,557 (46.9%)	14,938 (51.7%)	16,057 (55.5%)	16,868 (58.3%)	17,947 (62.1%)	19,333 (66.9%)
서울	6,229	2,279 (36.6%)	2,642 (42.4%)	2,941 (47.2%)	3,175 (51.0%)	3,393 (54.5%)	3,561 (57.2%)	3,790 (60.8%)	4,158 (66.8%)
인천	1,345	458 (34.1%)	519 (38.6%)	587 (43.6%)	630 (46.8%)	681 (50.6%)	723 (53.8%)	766 (57.0%)	835 (62.1%)
경기	13,336	5,594 (41.9%)	6,605 (49.5%)	7,519 (56.4%)	8,198 (61.5%)	8,712 (65.3%)	9,041 (67.8%)	9,509 (71.3%)	10,099 (75.7%)
수도권 외	8,001	1,116 (13.9%)	1,710 (21.4%)	2,510 (31.4%)	2,935 (36.7%)	3,271 (40.9%)	3,543 (44.3%)	3,882 (48.5%)	4,241 (53.0%)

자료 :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제출자료를 재구성

2)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비용(합계) = 533,018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2022	2023	2024	2025	2026	계
세입	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 특례 (안 부칙 제2조)		△533,018	-	-	-	-	△533,018
	소계(a)		△533,018	-	-	-	-	△533,018
세출	-		-	-	-	-	-	-
	소계(b)		-	-	-	-	-	-
□ 총 비용(b-a)			533,018	-	-	-	-	533,018

○ 과태료 특례 = 533,018천원

$$= \text{수도권 외 자동차 대수} \times \text{대당 과태료 건수} \times \text{건당 과태료} \times \text{저공해 조치 비율}$$

$$= 3,760\text{대} \times 3.2\text{건} \times 100\text{천원} \times 44.3\%$$

- ※ 수도권 외 자동차 대수 : 2020.12월~2021.3월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차량 중 2021.11월말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3,760대 적용
- ※ 대당 과태료 건수 : 2020.12월~2021.3월 전체 운행제한 위반 차량 중 2021.11월 현재까지 저공해 미조치한 9,578대에 부과된 과태료 총 건수 30,671건으로 나눠 대당 3.2건 산출
- ※ 건당 과태료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[별표] <과태료 부과기준>의 마목 100천원 적용
- ※ 저공해 조치 비율 : 2020.12월~2021.3월 수도권 외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2021.9월까지 저공해 조치완료 비율인 44.3% 적용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예산분석관 박주용

☎ 02-2180-7954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